

연 수 규 정

제정 1993. 4. 24
개정 1996. 12. 31(개폐정리)
개정 1997. 5. 9
개정 1999. 7. 14
개정 2001. 6. 11
개정 2001. 7. 27(개폐정리)
개정 2002. 1. 9
개정 2006. 12. 8(개폐정리)
개정 2006. 12.29
개정 2011. 6. 9(개폐정리)
개정 2012. 4. 17
개정 2013. 4. 30(개폐정리)
개정 2013. 6. 10
개정 2014. 8. 29(개폐정리)
개정 2015. 3. 30
개정 2015. 6. 30(개폐정리)
개정 2018. 7. 6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원 및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7.14, 2001.6.11>

제2조 (구분) 직원에 대한 연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연수
 - 가. 자체연수
 - 나. 위탁연수
2. 해외연수

제3조 (연수계획 및 실시) ①주관부서장은 매년도말까지 다음연도의 종합적인 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연도중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당초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연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은 당해

부점장과 협의하여 연수계획을 조정·실시할 수 있다. <개정 '96.12.31>

②연수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한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연수목적
2. 연수범위와 내용
3. 연수교재
4. 연수기간
5. 연수대상자
6. 연수장소
7. 연수방법
8. 연수기관 또는 파견국
9. 강사
10. 소요예산
11. 평가방법
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연수비) ①연수자에 대하여는 연수비(신청료, 등록금, 교재대 기타 제비용 일체)와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해외연수의 경우에는 연수비이외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외연수비를 증감지급할 수 있다.

1. 현지 연수기관에서 연수비의 일부를 연수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2. 정부의 외화사용에 관한 특별허가나 제한이 있는 경우
3. 기타 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99.7.14>

제5조 (연수대상자의 선정) 연수대상자는 연수계획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해외연수의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장 국내연수

제6조 (자체연수) ①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직급 또는 직책별 기본교육훈련과정,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등으로 구분·실시한다.<개폐정리 2014. 8.29>

②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상업무를 통하여 직무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책임을 지며,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장에게 직무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시행을 의뢰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6.12.31>

제7조 (위탁연수) ①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또는 학문연구등을 위하여 자체교육으로 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교육기관에 위탁연수를 실시한다.

②위탁연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연수 : 국내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소정의 전문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2. 학술연수 : 관련학문의 연구를 위하여 국내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소정 기간내에 학업을 통한 학위의 취득을 하게 하거나 연구과정을 수료하게 한다.
3. 생애설계연수 : 은퇴 후 제2의 생애설계 지원을 위하여 은퇴준비 컨설팅, 재취업, 창업 교육과정 등 퇴직 후 생애설계과정을 이수하게 한다.<신설 2018. 7. 6>

제3장 해외연수

제8조 (해외연수) 해외연수의 종류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업무연수 : 실무수행능력의 개발을 위하여 관련된 분야의 기능훈련과 지식습득을 하게 한다.
2. 학술연수 : 관련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기간 학업을 이수하게 한다.
3. 테마연수 : 국제화시대에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체험을 통해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한다. <신설 '97.5.9>

제9조 (선발기준) ①해외연수대상자는 직위·직책·근무경력·근무성적·전공과목등을 참작하여 적합한 직원을 사장이 결정한다. <신설 '97.5.9, '99.7.14>

②해외연수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어와 전공과목의 시

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수의 성질상 연수자의 조건이 특정되어 있거나 연수를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은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자비유학) ① 직원이 자비로 해외에 유학하고자 휴직원을 제출한 때에는 그 전공과목이 공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9.7.14><개폐정리 2015. 6.30>

② 자비유학기간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6.10>

제4장 연수관리

제11조 (연수기간) 국내위탁연수 및 해외연수기간은 업무연수의 경우 6개월이내, 학술연수의 경우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연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3.30>

제12조 (연수자의 소속) 연수자는 연수기간중에는 연수명령당시의 소속부서에서 연수기관에 파견근무토록 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장기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1.7.27>

제13조 (연수중의 처우) 연수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하고 제반보수는 보수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연수의 중지·소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수자에게 연수의 중지 또는 소환을 명할 수 있다.

1. 질병·사고등으로 연수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명령·규칙의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정될 때 <개정 '99.7.14><개폐정리 2015. 6.30>
3. 학업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연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공사의 사정변경에 따라 연수가 필요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99.7.14><개폐정리 2015. 6.30>

제15조 (연수자의 근태) ① 연수자가 해당교육에 불참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②인사명령, 부득이한 업무사정 기타 취업규칙의 특별휴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기간중 불참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증빙자료를 첨부한 불참사유서(별지서식 제1호)를 소속부서장을 거쳐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9.7.17, 2018. 7. 6>

제16조 (연수평가) 주관부서장은 연수결과를 종합근무평정 및 인사관리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연수교육의 개선자료로써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2018. 7. 6>

제16조의2 (교육이수학점) ①관리직원은 재직기간 중 다음 표에서 정한 직급별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2012,4,17, 2018. 7. 6><개폐정리 2011.6.9., 2014. 8.29>

직 급	최소이수학점	필수과목
관리4급	6	
관리5급	6	승진자격에관한세칙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과목
관리6급	6	
관리7급	8	승진자격에관한세칙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과목

②교육과목별 학점부여기준은 이수학점기준표(별표1)에 의한다.<개정 2018. 7. 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학점을 부여하지 않는다.<신설 2018. 7. 6>

1. 주관부서 이외의 부서가 실시하는 교육
2. 특정부서 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 소양교육 (특강, 윤리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
3. 각종 세미나, 전시회 등
4. 외국어, 자격증과정 등 자기계발 성격의 교육
5. 체험 성격의 국내외 교육
6. 신입사원 입문교육

④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하여 연간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2학점에 12분의 해당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필수과목은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8. 7. 6>

1. 공사 업무수행과 관련한 출장 또는 파견
2.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3. 취업규칙에서 정한 산·전후 휴가 및 인사규정 제44조에서 정한 휴직(단, 제2항 제1호의 경우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함)
4. 인사규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경력직원의 경력기준

[본조 신설 2002.1.9]

제17조 (보고) 연수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장은 그 실시상황 및 평가 결과등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9.7.14>

제5장 연수자의 의무

제18조 (연수이수의무) ① 연수명령은 다른 인사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연수자는 연수기간중 공사의 취업규칙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소정의 과정을 우수하게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99.7.14><개폐정리 2015. 6.30>

③ 연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수를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7.14>

제19조 (서약서 제출)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연수자는 서약서(별지서식 제2호)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6>

제20조 (연수보고) ① 국내위탁연수자는 연수보고서·연수이수증명서·학위논문 및 기타 연수자료등을 수료후 7일 이내에 소속부서장을 거쳐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96.12.31>

② 해외연수자는 귀국후 3일 이내에 귀국신고서(별지서식 제3호)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연수보고서·연수이수증명서·학위논문 및 기타 연수자료등을 소속부서장을 거쳐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2018. 7. 6>

제21조 (의무복무) ① 연수비가 300만원이상 소요되는 연수이수자가 소정의 연수과정을 수료한 때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공사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개정'96.12.31, '99.7.14><개폐정리 2015. 6.30>

구 분	실 연 수 기 간	의 무 근 무 기 간
국내위탁연수	3개월미만	6개월이상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년 "
	6개월이상 1년미만	2년 "
	1년이상	3년 "
해 외 연 수	3개월미만	1년 "
	3개월이상 6개월미만	2년 "
	6개월이상 1년미만	3년 "
	1년이상 2년미만	4년 "
	2년이상	5년 "

②제1항의 규정중 해외연수의 실연수기간은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로 하며, 국내위탁연수와 해외연수를 각각 또는 합계하여 연중 2회이상 이수한 직원의 의무근무기간은 첫번째의 연수종료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

1. 국내위탁연수 또는 해외연수만을 2회이상 이수시는 실연수기간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의무근무기간
2. 국내위탁연수와 해외연수를 합계하여 2회이상 이수시는 그 중 최장기의 의무근무기간

제22조 (연수비의 변상) ①제21조의 규정에서 정한 의무복무를 하지 아니한 직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잔여기간에 비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6>

$$[(\text{의무복무기간} - \text{실 근무기간}) \div \text{의무복무기간}] \times \text{연수경비}$$

- ※ 연수경비란 피교육자에게 교육과 관련 하여 공사에서 지급한 일체의 경비를 말함 (여비 제외)
- ※ 잔여기간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하며, 변상금액은 천원 미만 절사함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그 변상액을 면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변상액의 일부만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1.6.11, 2013.6.10>

1. 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퇴직한 직원 <개정 '99.7.14><개폐정리 2015. 6.30>
2. 정년퇴직직원
3. 임기가 만료되어 퇴직한 임원 <신설 2013.6.10>
4. 재직중 사망한 직원
5. 기타 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직원 <개정 '99.7.14>

③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 해당하는 경우 연수자는 기지급된 연수비용중 해당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1. 법령위반 또는 연수에 태만하여 공사 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연수중지의 명을 받았을 때: 연수비용의 전액<개폐정리 2015. 6.30>
2. 공사의 제규정 또는 연수기관의 연수지침등을 위반하여 소정의 과정을 미수료 하였을 때: 연수비용의 전액<개폐정리 2015. 6.30>
3. 공사의 제규정 및 연수기관의 연수지침을 준수하였음에도 미수료하였을 때 : 연수비용의 반액 <개정 '99.7.14><개폐정리 2015. 6.30>
4. 미수료는 미리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 100점 만점에 50점미만으로 한다. <신설 2001.6.11>

④<삭제 2001.6.11>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31>

이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5.9>

이 규정은 1997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14>

이 규정은 199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6. 11>

이 규정은 2001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 27>

이 규정은 200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현재 직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직원에 대하여는 직급별 필수교육이수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지 아니한 직원이 취득하여야할 잔여 직급별 필수교육이수학점은 직급별 필수교육이수학점에 잔여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학점을 말하며, 이수과목은 필수이수과목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부 칙 <2006. 12. 8>

이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제16조의2 제1항의 이수학점과 관련, 2006.12.31 일자 직제규정 개정 이전의 직급별 이수학점은, 개정직제규정에 의한 직급별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부 칙 <2011. 6. 9>

이 규정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17>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중 제16조의 2 본문 표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 및 직급변동이 있는 자에게 적용한다.

③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사한 자 및 직급변동이 있는 자에게는 제16조의 2 개정 전 본문 표를 적용한다. 단, 시행일 현재 관리6급은 개정 전 본문 표 사무2급을 적용한다.

부 칙 <2013. 4. 30>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10>

이 규정은 201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8. 29>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30>

이 규정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30>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별표1의 이수학점 기준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별표1> (제16조의2관련) <개정 2018. 7. 6>

이수학점기준표

구분	교육기간	학점	학점부여조건
통신 및 Cyber 교육	1개월~2개월	2점	과정 수료시
	3개월~4개월	2.5점	
	5개월~6개월	3점	
사내·외 집합교육	4시간이상~8시간이하	0.5점	과정 수료시
	9시간이상~16시간이하	1점	
	17시간이상~40시간이하	2점	
	41시간이상	3점	

※ 교육기간 계산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별지서식 제1호] <신설 2018. 7. 6>

불 참 사 유 서

연수규정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참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교육과정			
교육기관		교육일정	
불참사유			
※ 첨부 : 증빙자료			
20 년 월 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본인은 20 . . 부터 20 . . 까지 일(주, 개월)간 _____교육에 참가함에 있어서 연수규정 중 연수자로서 제반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특히 동 규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의무복무 및 연수비의 변상에 대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사가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민사·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182mm×257mm

[별지서식 제3호] <신설 2018. 7. 6>

귀국 신고서

연수규정 제20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외연수를 종료하고 귀국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연수 구분			
연수 지역			
출국 일자	20 . .	귀국 일자	20 . .
20 년 월 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